

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.

※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cc.go.kr>) 정책/정보센터→법령정보→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●**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-59호**

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12월 31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구분	표준번호	정보통신표준명
개정	KICS.OT-10.0003	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

부칙

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(<http://rra.go.kr>) → 방송통신기술기준·표준 →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**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-60호**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0년 12월 31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

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제2항”을 제39조제2항“으로 한다.

제3조11호 중 ”제4조“를 ”제5조“로 하고 ”같은 법 시행령 제7조“는 삭제한다.

제22조의2 제목 중 “2008~2009년도”를 “2010~2011년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2007년말”을 “2009년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08~2009년도”를 “2010~2011년도”로, “2006년도”를 “2008년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“2008~2009년도”를 “2010~2011년도”로 하며, “2007년도”를 “2009년도”로 한다.

제22조의3 제목 중 “2008~2009년도”를 “2010~2011년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08~2009년”를 “2010~2011년도”로, “2006년도”를 “2008년도”로 한다.